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고 제2024-10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박*희	1965. 5. 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02 대덕빌라 104동 404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피보험기간 180일 미충족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4년 10월 30일, 11월 8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주소불명)**

4.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강지수 주무관(Tel 031-560-1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